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4,046,122	28,621,384
일반회계	708,244,650	21,247,340
특별회계	245,801,472	7,374,044
기타특별회계	245,801,472	7,374,0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57,854	391,736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932,792	27,984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229,308	6,87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7,884	3,537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349,399	220,48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31,721	18,952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72	6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5,161,429	454,843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07,575,380	6,227,261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43,533	22,3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업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